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양육비 선지급 []취소 []중지 []변경 통지서(선지급 대상자용)

선지급 대상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
[] 취소

1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**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취소 사유:)

지원자녀명	대상자와의 관계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	선지급 시작 달	선지급 취소 대상 기간
		원	년 월	~

2. **유의사항**

가. **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는**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9에 따라 **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** 또한,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나. 반환금액, 납부기한, 납부방법 등에 대한 반환 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입니다(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).

[] 중지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**양육비 선지급이 중지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선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지원자녀명	대상자와의 관계	사유	선지급 중지 결정월
			년 월

※ 중지 사유

가.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· 질문을 거부 · 방해 · 기피하는 경우

나. 양육비 채무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

다. 자녀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 경우(「민법」 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)

라.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

[] 변경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으로 아래와 같이 **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변경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선지급 변경이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.

지원자녀명	대상자와의 관계	선지급금(월)		선지급 변경 결정월
		당초	변경	
		원	원	년 월

※ 업무담당자: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

년 월 일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

이의신청 안내

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**30일** 이내에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